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1인)

찬 성 자: 김낙관·김민성·김영태·박세채
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
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12인)

1. 제안이유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을 기존의 복지관·체육관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시설 유형을 포괄하고, 각 시설의 운영 기준과 기능을 세분화하며, 위탁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미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음.

장애인의 근로의욕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근거 명시(안 제6조)
- 나. 위탁관리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3장~ 제4장)
-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기능 명시(안 제5장)
- 라. 장애인 복지시설 13개소 표기(안 별표 1)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81조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0조

나. 부서검토: 장애인복지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한다. 다만, 장애인체육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따른다.

제5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의 유형 및 이용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시설의 종류, 운영 형태, 이용 기간 및 이용 방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장애인 거주시설
 -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나. 장애인 체육시설

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라. 수어통역센터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3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관리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사용료,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 위원회로 대체한다.

제9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이 폐쇄된 경우

②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에서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위탁운영하지 아니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 절차, 교부, 정산 및 관리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보조금 지원시설의 관리)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 여부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확인을 할 수 있다.

제5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기능

제1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제14조(기능)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 및 생활 지원
2.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개별 맞춤형 돌봄 및 지원
3. 의료·간호·재활서비스 연계 및 건강관리 지원
4.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5. 가족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체계 구축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자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제2절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제16조(기능)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 보호
2. 보호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입소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자 상담 및 자체 심의를 거쳐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입소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입소시킨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
2.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장애인

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10명 이내 또는 30명 이내로 하되, 시설별 정원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18조(기능)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제공 및 일상생활 지원
2. 가사활동, 사회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지도
3.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지원
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① 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하거나 자립생활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장은 입소자 선정 시 장애인의 자립가능성, 생활 능력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③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정원은 시설별로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되, 시설별 정원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절 장애인복지관

제20조(기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관리, 직업, 결혼,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사업
2. 기능훈련 및 직업훈련 등 직업훈련사업
3. 기능회복운동, 생활적응훈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재활훈련사업
4. 점자·수어·컴퓨터 교육 등 교육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절 장애인 체육시설

제21조(기능) 장애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 자립 및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
2. 장애인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
4.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제22조(사용허가) ① 장애인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시설 이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설 자체 프로그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우선한다.

1.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2.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
3.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4. 각급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행사
5.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개인 연습 및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동일 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할 수 있다.

제6절 수어통역센터

제24조(기능)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사후관리
2. 각종 민원, 가족 문제, 심리적 부적응 등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3.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과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 강화 사업
4.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역

제7절 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제25조(기능) 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각장애인등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2.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
3. 교육, 문화,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5. 그 밖에 시각장애인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26조(기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업상담 및 지도
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활동
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4. 그 밖에 장애인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7조(고용대상 장애인)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②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결정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구미시장애인 단기 거주시설(가칭)은 해당 시설의 준공일로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구분	명칭	위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다함께하는길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1길 150-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용산가산길 35
	구미시장재인 단기거주시설(가칭)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64-32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수효공동생활가정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서로 864-6
	다운공동생활가정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 25, 301호 (형곡동, 대성하이츠 1차)
	밀알행복터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3길 16-21, 101호 (형곡동, 대진주택)
장애인복지관	구미시장재인 종합복지관	경상북도 구미시 공원로 340 (형곡동)
장애인 체육시설	구미시장재인체육관	경상북도 구미시 공원로 340 (형곡동)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구미시시각장애인 등생활지원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85 (봉곡동)
수어통역센터	경북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4길 7 (형곡동)
	구미수어통역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6길 20-5, 2층 (원평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미직업재활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4길 19 (임은동, 임은5길 4-14 1층)
	하랑직업재활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248, 1-1층 (사곡동)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1. 복지관 강당 (단위: 원)

기준	사용일별	사용료	냉난방료 (사용시)	비 고
1회 (2시간)	평일	20,000	10,000	○ 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토·일, 공휴일	24,000	12,000	

2. 실내 체육관 (단위: 원)

구분	사용일별	대상별	사용료	냉난방료 (사용시)	비 고
체 육 관	평일 주간 (09시~18시)	장애인	50,000	15,000	○ 사용시간은 체육관은 1회 4시간, 식당은 1회 2시간 기준임
		비장애인	100,000	30,000	
	평일 주간외 및 토·일, 공휴일	장애인	60,000	18,000	
		비장애인	120,000	36,000	
식 당	평일 주간 (09시~18시)	장애인	15,000	5,000	○ 초과 시 기본 사용료 및 냉난방료의 각각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비장애인	30,000	10,000	
	평일 주간외 및 토·일, 공휴일	장애인	18,000	6,000	
		비장애인	36,000	12,000	

3. 체력단련실 (단위: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장애인	1개월	면제	동반 보호자는 비장애인 사용료의 50%를 감면
비 장 애 인	어린이	1개월	20,000 만7세 ~ 만12세(만6세 이하는 무료)
	청소년	1개월	25,000 만13세 ~ 만18세
	성인	1개월	30,000 만19세 이상(단, 만65세 이상은 50%를 감면)

4. 부대시설

구분	기준	사용료		비 고
		기본료	추가사용료	
음향시설	1회/1일	20,000원	마이크 1개당 5,000원	사용한 경우에 한함
LED시설	1회/1일	100,000원	전기·조명(4시간) 25,000원	초과 시 추가 사용료의 20%를 초과 1시간마다 가산

※ 본 사용료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47조에 따른 장애인의 공공시설 우선 이용 원칙을 고려하여 정함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 ④ (생략)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

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조 례 명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8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0조

□ 주요 사항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명시(안 제6조)
- 위탁관리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3장~제4장)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기능 명시(안 제5장)
- 관내 장애인복지시설(13개소) 현행화 및 명시(안 별표 1)

□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특정 장애인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던 관리 범위를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시설별 기능 및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 위탁관리 시설과 보조금 운영시설의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반을 보완·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시설별 기능 정립과 관리 범위 확대를 통해 운영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위탁관리 및 보조금 운영 기준을 체계화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소요예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